

「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」
2025년도 폐기물 성상 분석 위탁 용역

과 업 지 시 서

2024. 12.



여수시도시관리공단
YEOSU URBAN MANAGEMENT CORPORATION

과업지시서

1. 용역명 : 「여수시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」 2025년도 폐기물 성상 분석 위탁 용역

2. 목적 : 여수시 폐기물 정책수립(폐기물 부분 온실가스 소비량 산정·보고)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, 소각시설 운영시 소각로의 소각부하, 연소상태 및 배기가스 중 오염물질농도 등을 적정관리하기 위해 소각 대상 폐기물의 시료를 정기적으로 채취하여 분석하고자 전문기관에 용역 검토 함

3. 용역범위

1) 시험방법 : 폐기물공정시험방법 기준

2) 분석항목

시료	구분	항목
폐기물	물리적조성	종이류, 섬유류, 음식물류, 나무류, 정원및공원폐기물, 기저귀, 고무피혁류, 플라스틱류, 금속류, 유리류, 기타생활폐기물
	삼 성분	회분, 수분, 가연분
	저위발열량	고위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응축잠열을 제한 것
	고위발열량	연소반응에 의해 생성된 모든 수분이 응축된 상태로 존재할 경우의 발열량
	겉보기밀도	시료의 중량(kg 또는 ton)/용기의 부피(m ³)
바닥재	강열감량	시료를 강열하면 시료중의 휘발성분이 휘발 비산량을 백분율로 표시(폐기물 관리법 기준 소각시설 : 5%이하)
소각재	폐기물분석	납, 구리, 비소, 수은, 카드뮴, 6가크롬, 시안
시료채취: 측정 DATA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직접 방문 채취.		

3) 분석횟수:

- 생활폐기물, 바닥재(강열감량) 항목: 월 1회
- 소각재(안정화물, 바닥재 중 1) 폐기물분석 항목: 분기별 1회

※ 분석횟수는 소각시설 대정비 등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4. 용역기간 : 계약일로부터 ~ 2025. 12. 31.

5. 용역연장 : 용역기간 종료 시 바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차기 계약상대자 선정 시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6. 참가자격

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

나.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”중 [폐기물분석전문기관(일반분야)(6750)] 기관

다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3에 따른 비영리법인 (단,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의3,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 가능함)

※학술, 연구, 조사, 검사, 평가,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의 참가 허용

※<중소기업 확인서>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(<http://www.smpp.go.kr>)에서 확인을 하고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.

7. 과업의 진행

- 1) 계약체결 즉시 과업에 착수하며, 착수시에는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측정 분석결과는 지정된 기일 내 보고하되, 배출허용기준 초과 또는 측정값의 이상 변화를 확인하는 즉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발주처에 우선적으로 유선 통보하고, 이때 발생원인과 대책방안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공한다.
- 3) 국가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하고,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도 관련기관 등의 보완 및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
- 4) 본 용역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은 즉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- 5) 본 용역을 수행하는 현장 대리인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불성실 또는 부적절하게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.
- 6)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담당자와 협의 처리하되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른다.

8. 보안사항

- 1)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수행의 대표자 및 과업 종사자는 보안 관리에 만전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제3자에게 기밀 누설 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 다만,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- 2) 용역 수행자는 과업성과를 소각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.
- 3) 보안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,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.

9. 안전관리

본 용역과업의 수행에 종사하는 계약상대자의 인원과 관련한 안전관리와 재해의 처리, 안전사고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보상 등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다. 다만,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.

10. 측정결과 제출

- 1) 측정결과는 시료채취 후 20일 이내에 시험분석을 완료하여 제출한다.
- 2) 측정결과 보고서는 계약상대자의 양식으로 하되 반드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① 분석 의뢰인

- ② 분석의뢰 내용
- ③ 시료채취 일시, 장소 및 방법
- ④ 항목별 분석결과(대기 관련법의 배출허용기준 및 분석방법 포함)
- ⑤ 분석 기간 및 종료일
- ⑥ 시료채취 및 분석 책임자
- ⑦ 그 외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사항

11. 제반사항 및 비용의 청구 지급

- 1) 본 용역의 비용은 매월 단위로 지급한다.
- 2) 용역비용 청구는 발주자의 지정일자 이내에 문서로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한 해당 월의 비용은 익월 말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본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기간 중에는 유류비, 물가변동, 인건비, 장비의 증감 등의 사유 등 낙찰자의 사유로 인한 단가조정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.
- 4) 계약상대자의 원인과 책임으로 인하여 본 용역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대한 그 어떠한 비용도 낙찰자는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.

12. 계약의 해지

- 1) 본 과업지시서의 계약해지사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
- 2) 본 과업수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관련 법규위반 등 발주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
- 3) 과업수행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, 양도 또는 사업자 간에 이면공동수행등 본 과업지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
- 4) 과업지시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, 발주자의 시설운영/관리에 있어서 지장을 주거나 또는 피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
- 5) 용역수행 중 부도, 파산 또는 위법에 따른 행정조치, 과태료 등을 받거나, 발주자의 시설운영에 피해를 주는 경우
- 6) 과업지시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
- 7) 본 용역을 수행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행정기관 등으로

부터 행정조치 등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경우

- 8) 상기, 2)~7)항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해지 외에도 발주자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.

13. 기타사항

- 1)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시행한다.
- 2) 이 용역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.